

제41조의12 삭제 <2015. 12. 31.>

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<신설 2007. 2. 1.>

제41조의13(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)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"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·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6. 30.>

1. 건축폐기물·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
 2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
 3.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
-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"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. <개정 2011. 12. 31., 2013. 3. 23., 2015. 5. 26.>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1. 12. 31.,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41조의12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의13은 제41조의14로 이동 <2011. 12. 31.>]

제41조의14(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) 법 제36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1.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
 -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
 - 다. 「도로교통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
2. 보험회사가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41조의13에서 이동, 종전 제41조의14는 제41조의15로 이동 <2011. 12. 31.>]

제41조의15(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 사실 통지)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(이하 "보험회사등"이라 한다)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0. 6. 17.>
-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·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·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)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[제41조의14에서 이동 <2011. 12. 31.>]